산업통상부고시　제2026-114호

「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22일
산업통상부장관

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대외무역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 각 호(제4호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및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특별조치”란 산업통상부장관(이하 “장관”이라 한다)이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일체의 조치를 말한다.

2. “특별조치자문단”이란 장관이 영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무역·통상 등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단을 말한다.

3. “이해관계자”란 법 제5조 각 호를 원인으로 하여 무역·통상 등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.

4. “국제무역규범”이란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」(그 부속서를 포함한다) 및 우리나라가 교역상대국(교역상대국의 지역정부를 포함한다)과 체결한 무역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특별조치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

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자문단 운영)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특별조치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특별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
2.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피해사실
3. 특별조치 사유와 피해사실 간 인과관계
4. 국내법과 국제무역규범 합치 여부
5. 무역·통상·외교·안보 등에 관한 국익에 미치는 영향
6. 그 밖에 장관이 특별조치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

② 특별조치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.

1. 무역·통상 분야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
2. 무역·통상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
3. 무역·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무역·통상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임·직원
4. 그 밖에 무역·통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에 소요되는 자문료, 여비,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조사 결정) ① 장관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으로 특별조치에

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.

② 이해관계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(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다)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인의 성명·주소

2. 특별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

3. 피해사실 및 근거자료

4.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료

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,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(이하 “공고”라 한다) 한다.

④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.

1. 특별조치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

2.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이해관계자가 아니거나 신청을 철회한 경우

3.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

4. 동일·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로서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

⑤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고,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.

1. 신청한 내용이 거짓이거나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현저히 부족한

경우

2. 경미한 피해 등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3. 이해관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

4. 국제무역규범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
⑥ 제5항에 따른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사를 중단한 경우로서 3개월이 지나도 조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조사를 종결한다.

⑦ 장관은 조사를 중단하거나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공고하고,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조사 방법)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1.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

2. 관계 행정기관, 무역거래자,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

3. 관련 협회·단체, 소비자,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

제7조(조사 기간) 장관은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중단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국가 간 협의 등) 장관은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교역상대국과 협의하거나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계부처 협의) ① 장관은 특별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외교부,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장관은 교역상대국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한 경우 관계부처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.

제10조(공청회) ① 장관은 특별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,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14일 전까지 일시·장소, 안건제목, 발표자를 공고한다.

제11조(특별조치 결정) ① 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2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1. 국내 산업 및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
2. 국내법 및 국제무역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
3. 양자·다자·지역 간 협의 등을 통한 해결 가능성
4. 무역·통상·외교·안보 상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

② 장관은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,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
1. 특별조치의 내용
2. 특별조치의 대상 국가
3. 특별조치의 대상 물품등
4. 특별조치의 기간

③ 특별조치의 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한다. 다만, 그 기간이 종료한 경우라도 해당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특별조치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

2. 교역상대국과 협의 등을 통해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에 도달한 경우

⑤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무역·통상·외교·안보 상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2. 국제정세의 변화 등으로 특별조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3. 보호하려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이익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제12조(사후관리) ① 장관은 특별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장관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특별조치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특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.

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별조치를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 이를 즉시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재검토기한) 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0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■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 [별지 제1호 서식] <제정 2026. 10. 22.>

특별조치(조사)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확인	처리기간

신 청 인	상호명(단체명)		
	성명 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고유번호	
	주소		
	전화번호	이메일	
	거래 유형 수출[] 수입[] 경유[] 환적[] 중개[] 기타[]		
신청사유	신청사유		
	조사대상 국가		
	조사대상 물품등		
	외국의 조치내용		
	피해사실		
첨부자료	(예시) · 관련 법령 및 정책 원문 · 특별조치 사유를 증명하는 근거자료 · 피해금액 산출 근거자료 · 기타 참고자료		
특기사항			

「대외무역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■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 [별지 제2호 서식] <제정 2026. 10. 22.>

특별조치(조사) 통지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확인	처리기간

신 청 인	상호명(단체명)		
	성명 대표자 성명		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고유번호
	주소		
	전화번호		이메일
	거래 유형 수출[] 수입[] 경유[] 환적[] 중개[] 기타[]		
조사결정	결정내용	조사개시[] 조사각하[] 조사중지 [] 조사종결 []	
	결정사유		
특별조치 결정	결정내용	조치[] 미조치[]	
	결정사유		
특별조치 내용	대상 국가		
	대상 물품등		
	조치내용		
	조치기간		
비고			

「대외무역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